

분자전자부문위원회 연혁

지부자료

날 짜	장 소
1991. 6.	제 1차 결성준비모임 및 정관작성
1992. 2. 20	참석인 : 김정엽, 이서봉, 이후성, 박영우, 임승순, 진정일 창립총회, 초대위원장 김정엽 박사 기념강연회 연사 : 진정일, 박영우, 안중우, 권영수, 김진백, 윤문수
7.	운영위원회 구성 임승순(간사), 김낙중, 손태원, 안광덕, 이해원, 이희우
9. 25	분자전자심포지움 연사 : 강원, 김재호, 오응주, 최한용, 김성주, 신동명, 이신두, 최동훈, 우성원
1993. 11. 26	부문위원회 총회 제 2대 위원장 진정일 교수 분자전자심포지움 연사 : 안광덕, G. G. Wallace, 공명선, 김병규, 이해원, 이광섭, 전일철 운영위원회 구성
1994. 3. 1	김낙중(총무), 권영수, 김동호, 김병규, 김정수, 김장주 김철희, 박준원, 우정원, 이광섭, 이명수, 이명훈, 이범중, 이해원, 이희우, 한양구
3. 25	특별세미나(연사 : 송기국, 이명훈)
4. 16	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
10.	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
1995. 3. 25	분자전자심포지움 연사 : 김낙중, 박경윤, 심홍구, 이신두, 이해원, 임동권
4. 12	초청강연(연사 : Masamichi Fujihira)
4.	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
7. 5	초청강연(연사 : 손세환)
10.	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
12. 5	한국-헝가리 공동심포지움 주제 : 액정고분자 연사 : 이종천, 김병규, 이신두, L. Bata, A. Buke, K. Fodor-Csoba
1996. 2. 23	부문위원회 총회 제 3대 위원장 이후성 교수 분자전자 특별심포지움 주제 : 전기특성고분자 연사 : 이후성, 김동영, 이창진
3. 23	분자전자 특별세미나(연사 : 주진수, 차명식)
4. 20	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
1998. 1. 1	제 4대 위원장 : 심홍구, 총무 : 이해원, 재무 : 최동훈
2000. 1. 1.	제 5대 위원장 : 김낙중, 총무 : 이창진
2000. 11. 17	2000년 분자전자 산학연 심포지움 "제 1회 삼성종합기술원 GCF 기술 Forum" 장소 : 삼성종합기술원 Chemical Sector내 강당 (대전유성단지) Kenji Honda, 김낙중, Makoto Fujita, 이광섭 Kataro Kajikawa, 윤도영, 최환재, 박수영
2003. 1. 1	제 6대 위원장 : 이광섭, 총무 : 김환규
2. 20	2003년도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제1차 정례 세미나 장소 : 설악동 켄싱턴 호텔 연사 : 부웅순, 조봉래, 박수영, 황윤일

● ●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연혁 및 세칙

날 짜	장 소
2004. 2. 5-7	2004년도 한국고분자학회 (미래소재 및 소자 신기술)의 심층토론회 장소 : 제주 스위트 호텔 연사 : 김낙중, 이광섭, 박수영, 김은경, 강용수 외 5명
2005. 1. 1 2. 1	제 7대 위원장 : 김장주, 총무 : 최동훈 신년학술세미나 장소 : 연세대학교 제 2공학관 테크노 경영 최고위 과정 강의실 연사 : 정규하, 정태형, 현택환, 김은경
2006. 2. 15-17	(분자전자 소재 및 소자 신기술) 심층 토론회 장소 : 제주 스위트호텔 연사 : 우정원, 이택희, 진성호, 김철희, 김동유 외 6명
2007. 1. 1	제 8대 위원장 : 김환규, 총무 : 김재경

분자전자부문위원회 세칙

명칭 및 목적

- 제 1 조 본회는 한국고분자학회 분자 전자학 부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칭함)라 칭한다.
- 제 2 조 본 위원회는 분자 전자학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 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회 원

- 제 3 조 고분자학회 정회원은 본 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가입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입회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- 제 4 조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(1) 본 위원회 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- (2) 본 위원회 학술활동에 참가한다.
 - (3) 본 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다.
- 제 5 조 본 위원회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.
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기간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활 동

- 제 6 조 본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한다.
- 제 7 조 본 위원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
- 제 8 조 기타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
- 제 9 조 본 위원회는 위원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
조직 및 임원

- 제10조 본 위원회는 1인의 회장과 1명의 간사와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둔다.
- 제11조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한국고분자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12조 위원장은 간사와 운영위원 약간명을 지명한다.
-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14조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위해 임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.
- 제15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또 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.
- 제16조 본 위원회 총회는 본 학회 춘계총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.
- 제17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199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.
2. 초대 위원장은 본 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99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3.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 회원 10명 이상이나 또는 위원장에 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